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10

서 울 행 정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20구합51211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

원 고 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[redacted])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소송대리인 [redacted]공단 담당변호사 [redacted]

변 론 종 결 2020. 10. 29.

판 결 선 고 2020. 11. 17.

주 문

1. 피고가 2018. 12. 14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연번 2 내지 89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'당초'란 기재 각 세액 중 '경정'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10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[redacted]구 B 일대(이하 '이 사건 사업구역'이라 한다)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'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'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.

나. 원고는 2013. 6. 28.부터 2015. 2. 27.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속하는 별지 1 표 연번 2 내지 89번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하고, 이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 취득세율 4%를 적용하여 위 표 '당초'란의 각 기재와 같이 취득세 합계 2,591,940,910원, 지방교육세 합계 259,193,710원, 농어촌특별세 합계 129,596,670원(이하 통틀어 '취득세 등'이라 한다)을 신고, 납부하였다.

다. 원고는 2018. 10. 10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 2.8%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1 표 '경정'란의 각 기재와 같이 취득세 합계 1,814,358,637원, 지방교육세 합계 103,677,484원, 농어촌특별세 합계 129,596,670원을 초과하는 각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.

라. 피고는 2018. 12. 14. 원고에게 '2016. 6. 23. 대법원 2016두34783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수용재결로 인한 토지 등의 취득에 대하여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왔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10

으며, 이는 납세자와 관세관청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미 법 해석의 기준 및 관행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. 이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일반적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1000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, 위 판결에 의한 새로운 해석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.'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마.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. 2. 26.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, 2019. 12. 18. 기각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당사자의 주장

1) 원고

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사법상 원시취득이고,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'원시취득'의 의미는 사법상 원시취득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.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2.8%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.

2) 피고

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은 과세물건이 원시적으로 생성된 경우에만 인정되는바, 수용재결을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이 원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용재결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4%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10

나. 관계 법령

별지 2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에서의 '취득'을 '매매, 교환, 상속, 증여, 기부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건축, 개수(改修), 공유수면의 매립,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, 승계취득 또는 유상·무상의 모든 취득'으로 정의하고 있고,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'1천분의 28'로 정하고 있다.

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,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,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,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다(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98다58511 판결 등 참조).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,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, 수용재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,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.8%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(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6두34783 판결 등 참조).

2)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10

1항 제3호에 따라 2.8%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.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10

별지 1

이 사건 부동산 및 경정청구 내역

연번	제목명	증인명	구분	납부일자	정정과표	본세	지방교육세	농특세	세액합계	비고
1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08-19	7,413,299,650	296,531,980	29,653,190	14,826,590	341,011,760	
			경정			309,672,586	31,861,296	44,826,690	294,360,572	
2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0-31	91,389,370	2,844,190	284,410	142,200	3,270,800	
			경정			1,990,933	113,764	142,200	2,246,897	
3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95,956,000	2,986,310	298,630	149,310	3,434,250	
			경정			2,090,417	119,452	149,310	2,359,179	
4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385,150,070	11,986,530	1,198,650	599,320	13,784,500	
			경정			8,390,571	479,460	599,320	9,469,351	
5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0-31	8,408,017,730	336,360,708	33,636,070	16,818,030	386,814,808	
			경정			235,452,496	13,454,428	16,818,030	265,724,948	
6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0-31	2,068,518,230	82,548,720	8,254,070	4,127,030	94,921,820	
			경정			57,778,504	3,301,628	4,127,030	65,207,162	
7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0-31	146,466,805	5,858,670	585,860	292,930	6,737,460	
			경정			4,101,069	234,344	292,930	4,628,343	
8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0-31	5,855,286,501	234,211,460	23,421,140	11,710,570	269,343,170	
			경정			163,948,022	9,368,456	11,710,570	185,027,048	
9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0-31	5,964,807,714	238,592,300	23,859,230	11,929,610	274,381,140	
			경정			167,014,616	9,543,892	11,929,610	188,487,912	
10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1,233,457,280	49,337,490	4,933,740	2,466,870	56,738,100	
			경정			34,536,243	1,973,496	2,466,870	38,976,609	
11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0-31	13,947,942	557,910	55,790	27,890	641,590	
			경정			390,537	22,316	27,890	440,743	
12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0-31	1,431,565,489	57,262,610	5,726,260	2,863,130	65,852,000	
			경정			40,063,827	2,290,504	2,863,130	45,237,461	
13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6,041,682,850	232,926,900	23,292,680	11,646,340	267,865,920	
			경정			163,048,760	9,317,872	11,646,340	184,012,172	
14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44,124,450	1,764,970	176,490	88,240	2,029,700	
			경정			1,235,479	70,596	88,240	1,394,315	
15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11,178,250	447,130	44,710	22,350	514,190	
			경정			312,991	17,884	22,350	353,225	
16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15,947,050	637,880	63,780	31,890	733,550	
			경정			446,516	25,512	31,890	503,918	
17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684,631,370	27,385,250	2,738,520	1,369,260	31,493,030	
			경정			19,169,675	1,095,408	1,369,260	21,634,343	
18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43,670,770	1,746,830	174,680	87,340	2,008,850	
			경정			1,222,781	69,872	87,340	1,379,993	
19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383,106,250	15,324,250	1,532,420	766,210	17,622,880	
			경정			10,726,975	612,968	766,210	12,106,153	
20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255,405,430	10,217,210	1,021,720	510,860	11,749,790	
			경정			7,152,047	408,688	510,860	8,071,595	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10

연번	세목명	종건명	구분	납부일자	법정과표	본세	지방교육세	농특세	세액합계	비고
21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255,430,430	10,217,210	1,021,720	510,860	11,749,790	
			경정			7,152,047	408,688	510,860	8,071,595	
22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255,430,430	10,217,210	1,021,720	510,860	11,749,790	
			경정			7,152,047	408,688	510,860	8,071,595	
23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263,545,900	10,541,830	1,054,180	527,090	12,123,100	
			경정			7,379,281	421,672	527,090	8,328,043	
24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2,226,640	89,060	8,900	4,450	102,410	
			경정			62,342	3,560	4,450	70,352	
25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697,416,850	27,896,670	2,789,660	1,394,830	32,081,160	
			경정			19,527,669	1,115,864	1,394,830	22,038,363	
26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50,781,670	2,031,260	203,120	101,560	2,335,940	
			경정			1,421,842	81,248	101,560	1,604,650	
27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62,310,140	2,492,400	249,240	124,620	2,866,260	
			경정			1,744,680	99,696	124,620	1,968,996	
28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14,127,800	565,110	56,510	28,250	649,870	
			경정			395,577	22,604	28,250	446,431	
29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14,127,800	565,110	56,510	28,250	649,870	
			경정			395,577	22,604	28,250	446,431	
30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204,497,300	8,179,890	817,980	408,990	9,406,860	
			경정			5,725,923	327,192	408,990	6,462,105	
31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187,854,960	7,514,190	751,410	375,700	8,641,300	
			경정			5,259,333	300,564	375,700	5,935,597	
32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23,787,970	951,510	95,150	47,570	1,094,230	
			경정			666,057	38,080	47,570	751,687	
33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869,460,840	34,778,430	3,477,840	1,738,920	39,995,190	
			경정			24,344,901	1,391,136	1,738,920	27,474,957	
34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19,163,290	766,520	76,650	38,320	881,490	
			경정			536,564	30,666	38,320	605,544	
35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33,194,600	1,327,780	132,770	66,380	1,526,930	
			경정			929,446	53,108	66,380	1,048,934	
36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2,278,900	91,190	9,110	4,550	104,850	
			경정			63,833	3,644	4,550	72,027	
37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4,112,220	164,480	16,440	8,220	189,140	
			경정			115,136	6,576	8,220	129,932	
38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5,731,950	229,270	22,920	11,460	263,650	
			경정			160,489	9,168	11,460	181,117	
39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25,112,000	1,004,480	100,440	50,220	1,155,140	
			경정			703,136	40,176	50,220	793,532	
40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293,301,330	11,732,060	1,173,200	586,600	13,491,860	
			경정			8,212,442	469,280	586,600	9,268,322	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10

일련	세목명	물건명	구분	납부일자	일정과표	본세	지방교육세	농특세	세액합계	비고
41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23,148,340	925,930	92,590	46,290	1,064,810	
			경정			648,151	37,036	46,290	731,477	
42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607,762,830	24,310,510	2,431,050	1,215,520	27,957,080	
			경정			17,017,357	972,420	1,215,520	19,205,297	
43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38,445,270	1,537,810	153,780	76,890	1,768,480	
			경정			1,076,467	61,512	76,890	1,214,869	
44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38,445,270	1,537,810	153,780	76,890	1,768,480	
			경정			1,076,467	61,512	76,890	1,214,869	
45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38,445,270	1,537,810	153,780	76,890	1,768,480	
			경정			1,076,467	61,512	76,890	1,214,869	
46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3,315,296,751	132,531,870	13,253,180	6,626,590	152,411,640	
			경정			92,772,309	5,301,272	6,626,590	104,700,171	
47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2,038,202,520	81,528,100	8,152,810	4,076,400	93,757,310	
			경정			57,069,670	3,261,124	4,076,400	64,407,194	
48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977,157,525	39,086,300	3,908,630	1,954,310	44,949,240	
			경정			27,360,410	1,563,452	1,954,310	30,878,172	
49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977,157,525	39,086,300	3,908,630	1,954,310	44,949,240	
			경정			27,360,410	1,563,452	1,954,310	30,878,172	
50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488,779,956	19,551,190	1,955,110	977,550	22,483,850	
			경정			13,685,833	782,044	977,550	15,445,427	
51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488,779,956	19,551,190	1,955,110	977,550	22,483,850	
			경정			13,685,833	782,044	977,550	15,445,427	
52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2,551,191,195	102,047,640	10,204,780	5,102,380	117,354,780	
			경정			71,433,348	4,081,904	5,102,380	80,617,632	
53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38,377,020	1,535,080	153,500	76,750	1,765,330	
			경정			1,074,556	61,400	76,750	1,212,706	
54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512,449,657	20,497,980	2,049,790	1,024,890	23,572,660	
			경정			14,348,586	819,916	1,024,890	16,193,392	
55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512,449,657	20,497,980	2,049,790	1,024,890	23,572,660	
			경정			14,348,586	819,916	1,024,890	16,193,392	
56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512,449,657	20,497,980	2,049,790	1,024,890	23,572,660	
			경정			14,348,586	819,916	1,024,890	16,193,392	
57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512,449,657	20,497,980	2,049,790	1,024,890	23,572,660	
			경정			14,348,586	819,916	1,024,890	16,193,392	
58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16,664,725	666,580	66,650	33,320	766,550	
			경정			466,606	26,660	33,320	526,586	
59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1,252,854,391	50,114,250	5,011,420	2,505,710	57,631,380	
			경정			35,079,975	2,004,568	2,505,710	39,590,253	
60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7,759,112	310,360	31,030	15,510	356,900	
			경정			217,252	12,412	15,510	245,174	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10

번호	목록명	종건명	주문	납부일자	경정과목	본세	지방교육세	농특세	계액합계	비고
61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19,315,402	772,610	77,260	38,630	888,500	
			경정			540,827	30,904	38,630	610,361	
62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5	19,315,402	772,610	77,260	38,630	888,500	
			경정			540,827	30,904	38,630	610,361	
63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21,531,797	861,270	86,120	43,060	990,450	
			경정			602,889	34,448	43,060	680,397	
64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68,282,391	2,731,290	273,120	136,560	3,140,970	
			경정			1,911,903	109,248	136,560	2,157,711	
65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1,171,614,052	46,864,560	4,686,450	2,343,220	53,894,230	
			경정			32,805,192	1,874,580	2,343,220	37,022,992	
66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2,999,426,898	119,977,070	11,997,700	5,998,850	137,973,620	
			경정			83,983,949	4,799,080	5,998,850	94,781,879	
67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2,321,723,243	92,868,920	9,286,890	4,643,440	106,799,250	
			경정			65,008,244	3,714,756	4,643,440	73,366,440	
68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1	409,708,396	16,398,730	1,639,076	819,530	18,849,330	
			경정			11,473,511	655,628	819,530	12,948,669	
69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4	866,354,270	1,622,890	162,280	81,140	1,866,310	
			경정			1,136,023	64,912	81,140	1,282,075	
70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4	866,354,270	1,622,890	162,280	81,140	1,866,310	
			경정			1,136,023	64,912	81,140	1,282,075	
71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4	571,792,800	637,670	63,760	31,880	733,310	
			경정			446,369	25,504	31,880	503,753	
72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4	571,792,800	637,670	63,760	31,880	733,310	
			경정			446,369	25,504	31,880	503,753	
73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4	25,378,344,100	46,033,210	4,603,320	2,301,660	52,938,190	
			경정			32,223,247	1,841,328	2,301,660	36,366,235	
74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4	1,632,353,420	2,336,810	233,680	116,840	2,687,330	
			경정			1,635,767	93,472	116,840	1,846,079	
75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4	1,474,448,500	2,917,760	291,770	145,880	3,355,410	
			경정			2,042,432	116,708	145,880	2,305,020	
76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4	2,657,740,280	106,309,610	10,630,960	5,315,480	122,256,050	
			경정			74,416,727	4,252,384	5,315,480	83,984,591	
77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4	389,751,600	15,590,060	1,559,000	779,500	17,928,560	
			경정			10,913,042	623,600	779,500	12,316,142	
78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4	6,205,090	248,200	24,820	12,410	285,430	
			경정			173,740	9,928	12,410	196,078	
79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4	44,495,480	1,779,810	177,980	88,990	2,046,780	
			경정			1,245,867	71,192	88,990	1,406,049	
80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4	17,696,488	707,830	70,780	35,390	814,020	
			경정			495,491	28,312	35,390	559,197	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10

연번	세목명	물건명	구분	납부일자	결정과표	본세	지방교육세	농특세	세액합계	비고
81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4	66,000,112	2,641,200	264,120	132,060	3,037,380	
			경정			1,848,840	105,648	132,060	2,088,548	
82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4	18,382,569	735,300	73,530	36,760	845,590	
			경정			514,710	29,412	36,760	580,882	
83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5	516,845,950	20,673,830	2,067,380	1,033,690	23,774,900	
			경정			14,471,681	826,952	1,033,690	16,332,323	
84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1-05	13,765,097	550,600	55,060	27,530	633,190	
			경정			385,420	22,024	27,530	434,974	
85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2-03	5,894,777,890	24,273,130	2,427,310	1,213,650	27,914,090	
			경정			16,991,191	970,924	1,213,650	19,175,765	
86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3-12-06	103,633,400	4,143,330	414,330	207,260	4,767,120	
			경정			2,901,731	165,812	207,260	3,274,803	
87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4-06-30	14,864,760	594,590	59,450	29,720	683,760	
			경정			416,213	23,780	29,720	469,713	
88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5-05-07	322,056,620	12,882,260	1,288,220	644,110	14,814,590	
			경정			9,017,582	515,288	644,110	10,176,980	
89	취득세(부동산)		당초	2015-05-07	539,141,700	21,565,680	2,156,560	1,078,280	24,800,520	
			경정			15,095,962	862,624	1,078,280	17,036,866	

끝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10

별지 2

관계 법령

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제45조(권리의 취득·소멸 및 제한)

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,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.

8. 취득 : 매매, 교환, 상속, 증여, 기부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건축, 개수, 공유수면의 매립,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,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.

■ 지방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6조(정의)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취득"이란 매매, 교환, 상속, 증여, 기부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건축, 개수(改修), 공유수면의 매립,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, 승계취득 또는 유상·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.

제11조(부동산 취득의 세율)

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

3. 원시취득: 1천분의 28
7.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
 가. 농지: 1천분의 30
 나. 농지 외의 것: 1천분의 40. 끝.